

1. 2013학년도 2학기 분납학생의 등록금 환불금액 예시

가. 학기개시일: 2013년 8월 19일 (30일선: 9월 24일, 60일선: 10월 24일, 90일선: 11월 25일)

나. 환불 예시(공업계열 1학년 기준)

(단위: 원)

예시	학적변동	반환 기준일	등록금 (A)	등록금 전액 납부 시		분납 시	
				환불금액 (B)	미환불금액 (C=A-B)	납부금액(D)	환불금액(D-C)
1	자퇴제적 (2013. 9.24)	자퇴제적일 (2013. 9.24)	3,338,000	2,781,670 (A×5/6)	556,330	1,112,670	556,340
2	자퇴제적 (2013.10.24)	자퇴제적일 (2013.10.24)	3,338,000	2,225,330 (A×2/3)	1,112,670	1,112,670	0
						2,225,330	1,112,660
3	미등록제적 (2013.11.25)	미등록제적 (2013.11.25)	3,338,000	1,669,000 (A×1/2)	1,669,000	2,225,330	556,330
						3,338,000	1,669,000
4	자퇴제적 (2013.11.26)	자퇴제적일 (2013.11.26)	3,338,000	0	3,338,000	3,338,000	0

※ 등록금의 반환기준(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및 학칙 제48조의3)

반환 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	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부터	반환하지 아니함